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1. 위 치: 대전광역시 관할(539.66km²)
2. 용 역 명: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3. 과업대상 용역개요
 -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 1) 기초조사
 - 2) 지표 및 계획기준
 - 3)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 4)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 5) 에너지자립화 계획
 - 6)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7) 운영 및 관리계획
 - 8) 재정계획
 - 나. 침수시물레이션 분석 A=3.48km²(내수재해 위험지구 면적)
 - 1)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2) 홍수유출모델링
 - 3) 침수피해영향 저감계획 수립평가
 - 다. 하수대장 및 맨홀조사, 조서작성 A=146km²
4. 총용역비: 3,070백만원
5. 착수 예정년월일: 2026. 12.
6. 완료 예정년월일: 착수일로부터 24개월

2026. 10. .

신청인 : 수질개선과장 (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용역설명서

의안번호					
용역명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발주방법	PQ + TP		요청구분	입찰방법의 적정성·합리성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공종	-		공사구분	기본계획	
용역개요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침수시물레이션 분석 A=3.48km ² , 하수대장 및 맨홀조사, 조서작성 A=146km ²				
위치	대전광역시 관할(539.66km ²)				
용역기간	2026년 12월 ~ 2028년 11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간					
총공사비	-		용역비	3,070,000천원	
보관장소					
문서번호	㉠		의결구분	㉡	
요청일	2026년 10월 일		심의일	㉢년 월 일	
첨부서류					
설계회사	해당 없음				
심의위원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명칭	참여분야	참여기간
		해당		없음	
기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의거 PQ+TP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자 함 ※ PQ+TP 평가기준 적용 / 업체 선정(예정)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료

I 용역개요

- 용역명 :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26. 12. ~ 2028. 11.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비 : 3,070백만원
- 과업범위
 -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 1) 기초조사
 - 2) 지표 및 계획기준
 - 3)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 4)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 5) 에너지자립화 계획
 - 6)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7) 운영 및 관리계획
 - 8) 재정계획
 - 나. 침수시물레이션 분석 $A=3.48\text{km}^2$ (내수재해 위험지구 면적)
 - 1)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2) 홍수유출모델링
 - 3) 침수피해영향 저감계획 수립평가
 - 다. 하수대장 및 맨홀조사, 조서작성 $A=146\text{km}^2$

II 그동안 추진상황

- '86. 11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 '92, '99, '06, '12, '17, '2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6차)
- '26. 9.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III 향후계획

- '26. 10.: 건설기술심의(정책기획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감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회계과)
- '26. 11.: 집행계획 등 공고,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TP)
- '26. 12.: 용역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용역 착수

IV 입찰방법 결정

○ 입찰 방법(PQ, SOQ, TP) 결정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영 제51조, 제52조, 규칙 제28조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용역 선정조건>



용역비	기본계획 / 기본설계	실시설계
2.3~10억	PQ & SOQ	PQ
10~15억		PQ & SOQ
15~30억		
30~40억	PQ & TP	
40억 이상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u>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처리시설</u>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입찰방법 검토결과

- 용역비 30억원의 기본계획으로 PQ평가 후 TP 평가

V 세부평가기준 의견수렴 결과

○ 수렴기간: '26. 10. 1.(목) ~ 10. 7.(7일간)

○ 세부평가기준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적용
- 전차용역 해당없음
- TP평가로 PQ평가 참여업체 QBS(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미평가 → 배점 3점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평가

○ 의견수렴결과: 제출의견 없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발주 사유

< PQ 대상 여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규정에 따라 “용역비 2.3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TP 대상 여부 >

○ (금액 기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제2항 제2호 나목의 “용역비가 30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에 해당되어 기술 제안서(TP)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난이도 기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2항 제1호 대상용역의 가목의 “공공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목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 발행)」
I.제도개요 3.SOQ, TP 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 나.난이도 기준의 “하수(5만톤/일 이상) 처리시설”에 해당

< 발주 부서 검토결과 >

- 본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관리계획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의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대상이며,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 용역에 해당되어,
- 금액 및 난이도 기준에 적정하므로 “사업수행능력(PQ)+기술제안서(TP) 평가”로 발주방법을 결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 (중략) -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추정가격이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메뉴얼(국토교통부 2022. 4월)

○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구 분	현 행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용 역 비	기본계획, 기본설계
	2.3 ~ 10억	PQ
	10 ~ 30억	PQ & SOQ
	30억 이상	PQ & TP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2.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6-439호, 2026. 1. 2.)

○ 난이도 기준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u>하수(5만톤/일 이상) · 폐수(1만톤/일 이상)처리시설</u>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